「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4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창업경제국장 김 영 철

2. 제안이유

가. 중기부「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대구시·경북도)가 조성하는「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에 참여하여 벤처·스타트업 지원

나.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7회계연도(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대상기관

기관명	한국벤처투자
대 표	이대희
설립일	2000. 3. 31.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 출자예정액 : 10억원

- 26년 4억원(40%), 27년 3억원(30%), 28년 3억원(30%)

(3) 출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투자조합 개요

(1) 조 합 명 :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2) 운 용 사 : 한국벤처투자

(3) 출 자 자 : 모태펀드, 대구시, 경북도, 구미·김천시, 은행·기업·대학

(4) 결 성 액 : 1,270억원(시비 10억원) * 총 결성액 및 출자자 변경될 수 있음

(단위:억원)

출자기관	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270	508	381	381
모태펀드	750	300	225	225
대구광역시	78	31.2	23.4	23.4
경상북도	50	20	15	15
구미시	10	4	3	3
김천시	5	2	1.5	1.5
은행·기업·대학	377	150.8	113.1	113.1

(5) 존속기간 : 12년

(6) 투자대상 : AI 및 초격차 딥테크 기업 등 지역 미래산업 유망 창업·벤처기업

(7)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중기부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 및 1회 출자금 납입 (26년)
- 2회 출자금 납입 (27년)

(8) 기대효과

-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

다. 출자 필요성

(1)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AI 및 초격차 딥테크 기업 등 지역 미래산업 유망 기업에 선제적 투자

(3)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3억원) * 출자예정액 10억원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출자안은

-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3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대구·경북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총 1,27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초광역 투자조합으로,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AI 및 딥테크 분야의 지역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 투자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펀드가 2038년까지 장기간(12년) 운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의 투자 성과와 운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임.

- 또한, 유사한 펀드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혼선 없이 기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 관내 기업이 펀드 투자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